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가단53005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 B과 D 사이의 2016. 11. 16. 10,000,000원에 대한 금전증여계약 및 피고 C과 D 사이의 2016. 11. 16. 10,000,000원, 2017. 1. 20. 4,950,000원에 대한 각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1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8038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9. “피고 D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4. 10.부터 2012. 7. 3.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D가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2021. 11. 1. 현재 193,134,247원이다.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행위

D는 2016. 11. 16.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자녀인 피고 B에게 10,000,000원,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D는 2007. 1. 20. F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4,95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D의 위 각 이체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이체행위’라고 한다).

다. D의 파산면책 사건

D는 전주지방법원 2018하단691 파산선고, 2018하면691 면책 사건을 2018. 11. 23. 접수하였고, 파산선고 사건은 2019. 6. 27. 폐지, 면책사건은 2019. 8. 8. 불허가되었으며, D가 즉시항고 하였으나 2020. 2. 27. 기각되었다.

위 면책 사건의 면책 불허가 이유는 D는 채무 원금만 360,000,000원 정도에 이른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11. 16. 20,000,000원 및 2017. 1. 20. 4,950,000원을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 D는 다수의 개인 채권자들을 누락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사실 등이다.

라. D의 무자력

D가 피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이체할 당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통해 피고 B에게 10,000,000원, 피고 C에게 14,950,000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D는 2016. 11. 16. 주식회사 E에서 받은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이체하였고, 당시 사업자 대표였던 피고 C의 통장으로 피고 B이 이체받은 10,000,000원에 준하는 금액을 며칠에 걸쳐 다시 이체하였다. 피고 C 통장으로 이체받은 금액은 사업자 대표명의였기 때문에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당시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신용카드대출과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자녀인 피고들은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D가 하였고, 빌린 금액도 상당부분을 주식회사 E에 상환하는 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대출을 받아 증여를 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 B은 2015. 1. 12.부터 2017. 1. 11.까지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C도 2017. 3. 대학입학을 하였고 그 전 해에 입학준비로 인하여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D가 대출을 강요해서 피고들이 그 돈을 받았어야 증여를 했다는 주장이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추후 어떠한 이득을 보거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D의 재산상태

원고가 D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 D의 이 사건 각 이체행위 당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가 2016. 11. 16. 피고 문장에게 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2007. 1. 20. 피고 C에게 4,95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 및 D와 피고들이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 위 금액들이 D의 사업자금 내지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와 같은 금원이 이체될 당시 D가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별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들 주장과 같이 D가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금전 이체행위를 증여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하여 각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모두 D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 바(2006. 05. 11. 선고 2006 다 11494 판결 등 참조), D의 자녀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이체행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한 금전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D의 사해의사 및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피고들은 D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14,950,000원(=10,000,000원+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